

서울시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 보고 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사유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 관할 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익법인 지정추천 심사 기준 강화에 따라,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대상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지정 심사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지정 추진을 위한 정관 조문 정비(제42조)
 -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대상을 기존 '법인이나 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수정
 -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익법인 심사 기준 강화에 따른 보완 사항 반영
 - ※ 서울시 타 기관의 경우, 귀속 대상을 '법인이나 단체'로 두고 승인받은 사례가 있으나, 심사 기준 강화로 미개정 시 공익법인 지정 추진이 불가하다는 실무 지침 반영

현 행	개 정 후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붙임 재단법인 서울시재단 정관 개정(안) 전문 1부. 끝.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정관

제정 2016.05.25.
개정 2016.07.05.
개정 2017.05.31.
개정 2017.10.24.
개정 2018.03.28.
개정 2018.12.26.
개정 2019.03.06.

개정 2020.05.08.
개정 2021.07.14.
개정 2022.04.19.
개정 2023.03.21.
개정 2024.03.13.
개정 2025.03.06.
개정 2025.07.01.

개정 2026.01.13.
개정 2026.06.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AI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07.01〉

제2조(목적) 재단은 「민법」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4. 2025.07.0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강화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7. 14 2025.07.01〉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8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 ② 상근 임원은 이사장에 한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장
〈개정 2017. 10. 24, 2018. 12. 26, 2023. 03. 21, 2025. 03. 06.〉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설 2017. 10. 24, 개정 2018. 12. 26, 2023. 03. 21〉

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26, 2023. 03. 21, 2025. 03. 06.〉

④ 시장은 이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⑤ 선임직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해당 분야의 이해도가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18. 12. 26〉

제10조(성과계약) ① 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은 이사장과 이사장의 임기 중 달성하

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동 조항의 위원추천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여한 임원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재단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재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 제외)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 포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방법)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의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

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신설 2023. 03. 21>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3. 03. 21>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호에서 이동 2023. 03. 21>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 03. 21>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임원이 자격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상근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 ②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이사장(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자신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은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별표2, 조직은 별표3과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5.07.01〉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재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7. 5. 31〉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자문위원단

제31조(설치)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자문위원단 등을 둘 수 있다.

제32조(운영) ① 자문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개정 2026. 1. 13>
 2. 중앙정부 지원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⑥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13>

제3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3. 28>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8>

제38조(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022. 4. 19.>

② 재단은 결산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2. 4. 19.>

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26. 6. 00.>

제43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의 당연직 임원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5.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7.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3.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3.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3. 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7.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1.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6.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5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별표2〉

정 원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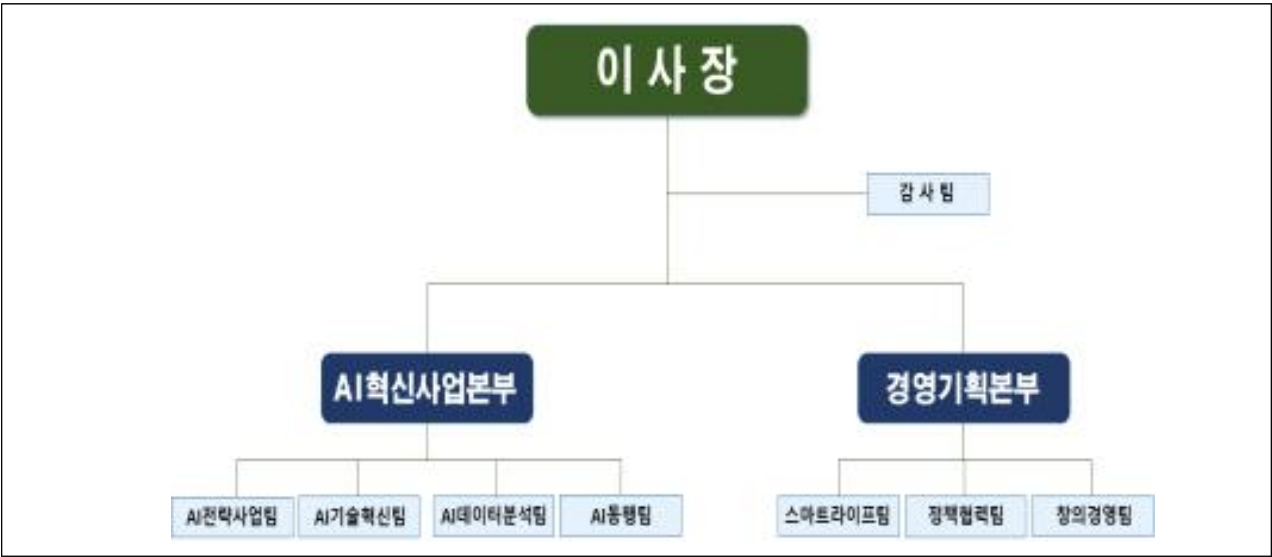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상근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54	1	1	1	3	11	21	14	2

〈신설 2022. 04. 19. 개정 2025. 07. 01. 2026. 01. 13.〉

〈별표3〉

조 직 도



〈신설 2022. 04. 19., 개정 2023. 03. 21., 2024. 03. 13., 2025. 03. 06. 2025. 07. 01〉